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4. 10 선고 2017가단110739 판결 [물품매매대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코웨이 주식회사

피고A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8. 4. 1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32,226,5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. 12. 1.부터 2018. 1. 16.까지는 연 6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임민성

별지